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 20200694

에듀하임
스 · 터 · 디 · 카 · 페

최초등록일 : 2020.06.08

최종등록일 :

에듀하임
스 · 터 · 디 · 카 · 페

정 보 공 개 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식회사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28, stx-v 타워, 10층 1006호

TEL : 02-555-0567 FAX : 02-555-1973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창업혁신본부 영업파트/ 02-555-0567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식회사			
영업표지	주소			
에듀하임 외 2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28, stx-v 타워,10 층 1006 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 12. 10	2004. 1. 1	고승재	02-555-0567	02-555-1973
법인등록번호	110111-2912411	사업자등록번호	120-86-6108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이사	고승재	에듀하임 외 2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28, stx-v 타워,10 층 1006 호		
			고승재	02-555-0567	02-555-1973
사용인 (사내이사)	남궁정연	에듀하임 외 2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28, stx-v 타워,10 층 1006 호		
			고승재	02-555-0567	02-555-1973
사용인 (사내이사)	이보영	에듀하임 외 2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28, stx-v 타워,10 층 1006 호		
			고승재	02-555-0567	02-555-1973
사용인 (감사)	조세원	에듀하임 외 2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28, stx-v 타워,10 층 1006 호		
			고승재	02-555-0567	02-555-197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 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에듀하임스터디카페	
상호	에듀하임스터디카페 ____점	
상표 서비스표		상표등록번호 40-1648285-0000 (2020.10.05.)
상표 서비스표		상표등록번호 40-1648286-0000 (2020.10.05.)

5.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10,276,273	2,901,343	7,374,931	16,901,211	1,856,660	1,469,543
2022 년	12,344,245	5,506,821	6,837,424	20,791,137	2,331,766	2,815,505
2023 년	12,062,786	6,230,299	5,832,487	20,967,296	834,786	840,690

그 근거자료는 별첨 [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당사는 최근 3 년동안 [에듀플러스], [에듀코치], [에듀하임] 가맹사업을 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업체/담당 업무
관련임원	고승재	대표이사	2004.1~현재 2014.2~현재 2015.4~현재	대표이사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운영총괄/대외활동 스포플렉스 사업부문 총괄 원키아 사업부문 총괄
관련임원	남궁정연	이사	2016.5~현재	이사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총본부 이사
관련임원	이보영	교육사업본부장	2020.5~현재	교육사업본부 본부장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교육사업본부 총괄 EMCI 본부장
비관련임원	조세원	감사	2023.5~현재	감사	비상근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3	13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	가맹사업 경영	2004.1~현재	에듀플렉스 (등록번호:20080100381)이라는 영업표지의 교육서비스사업 경영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	가맹사업 경영	2011.8~현재	에듀코치 (등록번호:20110100541)이라는 영업표지의 교육서비스사업 경영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	스포플렉스 (등록번호: 2016115)이라는 영업표지의 피트니스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출원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에듀하임 스 · 터 · 디 · 카 · 페 (상표권/서비스)	가맹점 운영	2019.10.21. 출원 2020.10.05. 등록	출원번호 40-2019-0160251 등록번호 40-1648285-0000	넥스큐브코퍼 레이션 주식회사	2030.10.05
 eduheim S·T·U·D·Y C·A·F·E (상표권/서비스)	가맹점 운영	2019.10.21. 출원 2020.10.05. 등록	출원번호 40-2019-0160255 등록번호 40-1648286-0000	넥스큐브코퍼 레이션 주식회사	2030.10.0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9 년 11 월 25 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에듀하임	고승재	2019.11.25. ~ 현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28, stx-v 타워, 10 층 1006 호

3. 에듀하임 업종

영업표지	업종	
에듀하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서비스	스터디카페(공간임대업)

4. 최근 3 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에듀하임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5. 최근 3 년간 해당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에듀하임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 레이션(주)	에듀플렉스	20080100381	교육	153/13	172/14	192/14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 레이션(주)	에듀코치	20110100541	교육	136/14	155/14	176/14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직전년도의 에듀하임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년말 가맹점수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비고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평균 매출액 산정 방식 : 가맹점의 운영 개월수가 6 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가맹점의 매출액은 평균매출액 산정 시 제외되며, 6 개월이상 1 년미만인 경우 운영기간에 따른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반영함.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에듀하임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나 지역총판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2 년]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8.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 천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01~12	2,081,748	2,081,748		
광고	소계	"	2,081,748	2,081,748		
판촉	소계	"	-	-		

※자세한 구분이 어려운 관계로 총액만을 기재합니다.

상기 광고 및 판촉비는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 스포플렉스, 에듀하임 합계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상기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개인상품부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 2 로 98	02-867-1461~3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가맹금 예치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넥스큐브코퍼 레이션(주)	의결 2023-22 호 (202 가조 1143)	가맹사업법	예상매출액 기재내용 (제 9 조제 1 항제 1 호)	2023.12.09	시정명령,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지, 과징금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V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건물 보증금/임대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지점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그 밖의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7,700		
영업표지 사용대가 (가입비 등)	71.4% 5,5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A.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경우 반환되는 가맹비는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사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B. 가맹계약 해지 : 본 계약의 만료까지 일(日)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	총 계약기간 중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노하우 및 개설팀원 대가 (가맹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교육, 홍보제공 등)	28.6% 2,200	계약 체결 후 다음날까지 A. 위 내용과 같습니다. B. 가맹계약 해지 :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시 반환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또는 <u>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2년)</u>			
계약이행 보증금	1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상품 자재의 대금, 교육비, 경영지도비, 광고 · 판촉비 등 모든 금전적 채무액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발생	1. 계약종료시 잔존채무액을 공제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갑"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제 1 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이나 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을"은

				계약기간 중 위 신용보증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합계	10,700
가맹비	7,7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기준 99 m² (30 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71,600	2,386			
인테리어/설비 (냉난방 불포함)	가맹본부 /시공업체	49,600	1,653	공사대금전액 완납 (착공 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시방서 제공 (99 m ² 기준)
필수집기(가구)	가맹본부	16,000	-	전액 완납 (발주 전)		일부 품목 지정
실내외 사인 (간판 등)	가맹본부	6,000		전액 완납 (발주 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지정업체 (미지정)

※별도비용: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간판 등 건적 외 품목

※ 위 표의 금액은 면적 99 m² (약 30 평)을 기준으로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면적의 증감 및 시장상황과 인테리어 설비의 변화 (철거, 냉난방기, 전기/가스증설, 용도변경, 소방설비, 외부공사 등)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표의 비용이외에도 당사는 가맹점주가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자체시공할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인테리어 컨셉제공, 설계도면 제공, 시방서 제공 및 간판/ 내,외부 사인 공사에 대한 검수비로 공사면적 3.3 m² 당 [330]천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지점을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상고객의 수, 교통량, 주위상권의 특성, 대상고객의 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점선정의 문의처 :당사의 영업본부,표지에 표기된 전화번호 참조』

6)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위 표의 공급업체는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V.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총 매출액의 5.5%	익월 21 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익월 3 일 까지 매출액 보고
광고 분담금 (전국 광고)	가맹본부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한 금액 사전통지 [통상 가맹본부(50%) 전체가맹점사업자(50%)]	분담금의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일	분담금 납부 후 1 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 행 시 반환 안됨	
광고 분담금 (지역 광고)	가맹본부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한 금액 사전통지 [통상 가맹본부(50%) 전체 가맹점 사업자(50%)]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일	분담금 납부 후 1 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 행 시 반환 안됨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교육 실시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 시 지급
상품대금	가맹본부	사용분	사전입금	하자품 반품	하자품 반품 외 안됨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당사의			VII. 1.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 용		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월[2]%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 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에 사전통지를 하고 분담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맹점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직전년도의 에듀하임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 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				
갱신 가맹비	1,100	갱신계약 체결일 기준 1 일 전까지	계약연장(갱신)전	가맹금 규정에 준함	

2) 가맹 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소유권(사용권)변경,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 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표지 사용대가를 제외한 노하우 및 개설지원대가 **2,200 천원(부가세 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3,000 천원(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완전한 계약기간 (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 가맹비 **7,700 천원(부가세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3,000 천원(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가맹계약서> 제 28 조 (계약의 종료 후 의무 및 조치) ① "을"은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갑"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갑"의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을 철거해야 하며,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전화번호 등록 및 안내문구, 인터넷(온라인)상의 브랜드 명칭사용 등(홍보용 온라인 커뮤니티 및 각종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 포함)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고 그를 증빙해야 하며, 만일 "을"이 "갑"의 영업표지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사용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사용권한을 "갑"에게 양도 또는 등록해지해야 한다. 단, 양수도의 경우, 해당 도메인의 사용권한을 양수인에게 승계한다."을"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업/폐업 사실증명서'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취하는 폐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을"의 지점폐쇄에 대해 "갑"의 내부 시스템에 공지 2. 웹사이트에서 명단삭제 및 블로그, SNS상 에듀하임 관련 내용 삭제 3. 에듀하임 노하우 사용금지에 대한 서약서 작성 4. 종료일까지 간판과 에듀하임 상표와 관련된 모든 표식을 삭제 / 계약해지 서약서 서명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을"은 "갑"의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④ "을"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손해금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의 지체일수 X 일할 계산한

계약 종료 및 해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로열티]로 계산한다. 단, 지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본 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오천만원(₩50,000,000)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은 본 계약의 종료일까지 또는 "갑"과 협의한 기한까지 "갑"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한다. 기한 내 채무에 대한 정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갑"은 잔존 채무에 대하여 월 2%의 지연배상금을 연체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⑥ "을"이 본 조의 의무 및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갑"은 "갑"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습니다.(직전사업연도 가맹점 없음)

순번	품목	규격	공급가격(원)		거래 상대방
			상한	하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음

귀하가 [에듀하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에듀하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당사가 [에듀하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계약해지 (상품공급중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및 위반시 책임]

취급상품 제한 내용 및 조건 및 위반시 책임
<가맹계약서> 제 23 조(물품공급 및 운영관리) ① "을"은"에듀하임"의 이미지 및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정한 물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지점운영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판매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에게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관리 책임은 "을"에게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③ "을"은 지점을 운영하며고객에게 징수하는 요금 등은 "갑"의권장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시에는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을"의 지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 25 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을"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제23조(물품공급 및 운영관리) 각 항의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거래 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 외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별첨[판매상품리스트],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제 22 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④"을"이 부정한 목적으로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갑"의	가맹계약의 해지	

제 3 자		영업상 신뢰를 훼손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23 조 (물품공급 및운영관리) ① 을”은”에듀하임”의 이미지 및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정한 물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지점운영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판매할 수 없다.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참조		사전 통지	

[가격통보방법 및 제한]

가격제한
<가맹계약서> 제 23 조 (물품공급 및 운영관리) ③ “을”은 지점을 운영하며고객에게 징수하는 요금 등은 “갑”의권장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시에는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스터디카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	에듀하임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영업거점 (입점상가) 기준 반경 500m, 단, 아래지역은 별개의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1.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m² 이상일 것) 2.역사(기차, 지하철)	계약서에 명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직전연도의 에듀하임 가맹점이 없으며 1개의 직영점이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연간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해당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 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⑤ +15 일 이내
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⑦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⑧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사유
<가맹계약서> 제 24 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 ①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상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을”이 고유의 운영철학과 전 지점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기법 및 시스템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다. “을”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제 25 조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을”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기간 중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상품 등의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2. “을”이 제13조(로열티)또는 제16조(경영지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을”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4.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지점관리 업무를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5. “을”이 “갑”과 협의한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을”이 “가맹점설비”를 “갑”이 규정한 매뉴얼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설하지 아니한 경우와 감리 후 수정사항이 발생 시 즉시 수정하여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7. “갑”의 “영업표지”를 “을”이 임의로 변경하여 각종 인쇄물에 표기하거나 실내·외 간판/선팅을 포함한 지점의 시설물에 설치 및 부착한 경우
 8. “을”이 고객을 기만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경우
 9. “을”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비밀유지서약을 어길 경우
 10. “을”이 지점 내에서 “갑”의 운영 관리방침과 현저하게 다르게 운영하여 “갑”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11. “을”이 제20조(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12. 제23조(물품공급 및 운영관리) 각 항의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13. “을”이 제17조(감독권 및 시정 요구권) 각 항에 의거한 “갑”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14. "을"이 제18조(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을"이 제29조(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무) 또는 제30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지점 내 공간을 "갑"의 신용력에편승하는 다른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17.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서>기타 해제사유

제 26 조(계약의 해제)

- ① "을"이 제10조(가맹점 설비), 제11조(인허가 및 사업자등록)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 ② 제13조(가맹비) 제5항에 의하여 본 계약 후 1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가맹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 ③ "을"이 지점을 오픈하기 이전에 각 계약당사자의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파기가 될 경우
- ④ 전항에 해당하는 계약파기에 대한 조항은 다음을 따른다.
 1. 계약파기의 사유가 "갑"에 있을 때, "갑"은 "을"에게 가맹비 100%를 반환한다. (건물계약금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계약파기의 사유가 "을"의 변심으로 인할 때에는 납입한 가맹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을"이 가맹계약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점을 오픈 하지 않을 경우, 영업권을 회수한다.
 4. "을"이 가맹계약 이후 1개월 이내에 지점을 오픈 하지 않을 경우, 13개월부터 "갑"은 "을"에 대해 매월 제13조(가맹비) 제1항의 가맹비의 20%씩 삭감하고 영업권 인수자를 찾을 수 있다.
 5. 단, 3호와 4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피치 못할 객관적 사실로 영업 오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 25 조(계약의 해지)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

<가맹계약서>

제 34 조(계약의 변경 등)

- ① 이 계약의 내용은 "갑",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프랜차이즈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그 내용을 확약한다.
- ② 어떤 당사자도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노동쟁의, 전염병, 격리, 수송 실패 또는 지연,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본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부터 벗어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당사의 재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계약 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
<가맹계약서> 제 20 조(영업양도 등) ①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지점 또는营业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담보제공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한 경우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점 또는 营业을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갑"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영업양도에 관한 규정 별첨1의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갑"이 위 1개월 이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의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단, "갑"은 정당한 사유("갑"과 "을"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가 있는 경우 "을"의 营业 처분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갑"은 가맹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을"의 지점/营业을 양수 또는 전차하고자 하는 제3자(이하 营业양수예정자)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营业양수인("을"의 지점/营业에 대한 营业양수 또는 전차 자격을 득한 자)을 제한할 수 있으며, 营业양수예정자는 "갑"의 자격심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⑤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营业양수인은 "을"의 "갑"에 대한 모든 营业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营业양수인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을"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营业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비 중 영업표지사용대가를 제외한 노하우 및 개설지원대가 일금 이백만원(₩2,000,000)(부가세 별도)를 비롯한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삼백만원(₩3,000,000)("을"의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을"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하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영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완전한 계약기간(10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계약에 준하여 당사 가맹비 일금 칠백만원(₩7,000,000)(부가세 별도)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⑦ 인수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을"과 영업양수인의 합의하에 진행하며, 인수 후 본 조의 합의에 관한 분쟁의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과 영업양수인이 가진다.
- ⑧ 영업양수인은 제2항에서 제6항의 지점인수를 마친 후, "갑"의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다.
- ⑨ 영업양도를 위한 인수대상의 물색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의 상속
<가맹계약서> 제 21 조(영업의 상속) ① "을"의 상속인은 "을"의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의 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및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갑"은 "을"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점포운영을 대표할 자를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을"의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을"의 영업상속인에 대해서는 "을"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며, 그 기간에 한하여 별도의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을"의 영업상속인은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갑"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의 상속인은 "을"의 직계존비속 또는 법정상속인에 한한다. ⑤ "갑"은 "을" 또는 "을"의 상속인에게 "을"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 · 대차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영업시간 제한,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대한민국 전지역에서]아래에 따라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비고
스터디카페, 기타 공간임대업 또는 독서실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경업금지
<가맹계약서> 제 29 조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무) ① "을"은 본 계약 존속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이에 부수되는 계약 등 "갑"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는 "갑"의 노하우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을"이 본 항을 위반할 경우, "갑"에게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을"의 직원과 고용계약 체결 시, "갑"이 제공하는 고용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서약서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비밀유지서약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③ "을"의 직원 혹은 "을"의 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유지 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을"은 "갑"이 "을"의 직원 또는 "을"의 직원이었던 자에게 각종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 소송을 포함한 각종 법률적 이의제기에 있어 사건의 당사자로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며,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당사자로서 법률적 이의를 제기할 경우,그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은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 종료나 계약해지 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본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실명 또는 개인에 대한 사항을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본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삼천만원(₩30,000,000)의 위약벌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0 조(경업금지의무) "을"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본 계약 존속 중, 본 계약에 정해진 것 이외에 "에듀하임"이 아닌 기타 공간임대업 또는 독서실을 개설, 경영해서는 안되며, 을"이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일수	영업시간	비고
점주 자율	점주 자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9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7 일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지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점주 자율	해당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지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체크 LIS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상기의 체크항목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지점의 운영을 체크하기 이전에 변경된 LIST 를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가맹지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는 당사의 담당팀은 총본부 경영관리팀입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분담금 (전국광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사전통지 광고비의 [통상:50%]	사전통지 광고비의 [통상:50%를 전체 가맹점이 분담]	별도 협의를 통해 분담	※ 전국광고 (라디오, 5 대일간지, 인터넷 포털등) (TV CM 은 별도 요청) ※ (지역광고)광고분담 금은 전국광고 분담기 준을 준용함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75%	2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 의 경품 제공,이벤트

단, 광고비와 광고분담금은 광고시장의 변화, 광고매체의 변경, 가맹본부의 운영방식 및 정책과 사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가맹본부가 운영중인 "후불제마케팅 광고"에 있어서는 본사가 사전에 부담비율 또는 금액을 공지 후, 지점별 협의를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한 뒤, 발생비용은 후불청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국 및 지역광고/판촉

<가맹계약서>

제 19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 ① "갑"은 가맹사업 전체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TV(CATV 포함),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정보지, 온라인(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판매 촉진 및 광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전국규모의 광고(TV CM, 라디오, 5대 일간지, 인터넷포털 등의 경우)의 경우 "갑"이 분담금액(이하 "광고분담금")에 대하여 "갑"과 각 가맹점사업자간의 비용분담의 배분 및 각 가맹점사업자간의 비용부담의 배분을 "을" 또는 "을"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및 공시하며, "을"

은 공시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에게 전항의 광고분담금으로 지정된 별도의 금액을 매월 17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입금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전항의 광고분담금이 연체될 경우, 제13조(로열티)에 따른다.
- ⑤ "을"은 영업증진을 위하여 "가맹점 별 개별 판촉 활동 및 광고"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을"은 그 행사 전에 광고 및 홍보 문안이나 내용에 관하여 "갑"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⑥ "갑"의 승인 없이 판촉 활동 및 광고집행의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광고물,기타 선전매체의 제작,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광고/판촉활동

<가맹계약서>

제 19 조(광고 및 판매촉진 등)

- ⑤ "을"은 영업증진을 위하여 "가맹점 별 개별 판촉 활동 및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그 행사 전에 광고 및 홍보 문안이나 내용에 관하여 "갑"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⑥ "갑"의 승인 없이 판촉 활동 및 광고집행의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 조문

<가맹계약서>

제 29 조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무)

- ① "을"은 본 계약 존속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이에 부수되는 계약 등 "갑"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는 "갑"의 노하우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을"이 본 항을 위반할 경우, "갑"에게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을"의 직원과 고용계약 체결 시, "갑"이 제공하는 고용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서약서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비밀유지서약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③ "을"의 직원 혹은 "을"의 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유지 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을"은 "갑"이 "을"의 직원 또는 "을"의 직원이었던 자에게 각종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 소송을 포함한 각종 법률적 이의제기에 있어 사건의 당사자로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며,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당사자로서 법률적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은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 종료나 계약해지 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본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실명 또는 개인에 대한 사항을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본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삼천만원(₩30,000,000)의 위약벌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0 조 (경업금지의무)

"을"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본 계약 존속 중, 본 계약에 정해진 것 이외에 "에듀하임"이 아닌 기타 공간임대업 또는 독서실을 개설, 경영해서는 안되며, "을"이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 27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①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위약금을 지급한다.

: 일할 계산한 "을"의 직전 3 개월간 평균 매출액 × 11% × 계약 해지일로부터 본 계약상 예정되었던 계약종료일까지의 잔여일

단, 천재지변 등 그 이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본 계약의 개별조항에서 그 위반행위에 관한 위약벌을 정할 수 있으며, "을"이 제28조(계약의 종료 후 의무 및 조치), 제20조(영업양도 등), 제29조(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무), 제30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개별조항에서 정한 위약벌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③ 개별조항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개별조항에서 정한 위약벌도 지급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관하여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위약벌은 각 위반행위마다 누적적으로 합산하여 산정된다.
- ④ "을"은"갑·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 일 내외	약 82,3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희망자 상담	D-45	
지점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지점 정보 제공 - 상권 분청 청약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가맹금/계약 이행 보증금)	D-29 (1 일)	10,700 (3,000 은 보증보험 대체가능)
지점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 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1 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D-5(20 일)	49,600
간판/사인 공사	- 공사 실시	D-5~D-3(3 일)	6,000
홍보	- 전단,현수막,버스광고 등 광고 시안제공/ Open 세미나 지원	D-21~14(8 일)	-
교육 실시	- 지점운영교육 실시	D-15~4 (11 일)	
집기 설치	- 집기 설치	D-2~D+2 (5 일)	16,000
지점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점의 상황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정이나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분쟁해결
<가맹계약서> 제 36 조 (재판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의 관할법원은 양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본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사업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	비고
신규 교육 (입문교육)	10 일	가맹금에 포함 (약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미정	실비	

※ 보수 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
<가맹계약서> 제 15 조 (교육 및 훈련) ① "을"은 "갑"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일적 운영 및 관리방법을 준수해야한다. ② "갑"은 "을"의 본건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문교육 외, 추가적인 직무 보수 교육 등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입문 교육 및 직무 보수 교육에 참가하는 "을" 및 직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 25 조(계약의 해지)	
17.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4년 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31,682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 2023 년 귀속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022 년 귀속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021 년 귀속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점 현황

[별첨#3]필수설비/집기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4]공급상품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5]판매상품 및 판매서비스리스트

서비스	권장가격	상품	권장가격
일일이용권(2 시간)	3,000 원		
일일이용권(4 시간)	6,000 원		
일일이용권(6 시간)	9,000 원		
일일이용권(8 시간)	12,000 원		
일일이용권(10 시간)	15,000 원		
일일이용권(12 시간)	18,000 원		
시간충전권(50 시간)	75,000 원		
시간충전권(100 시간)	150,000 원		
시간충전권(150 시간)	225,000 원		
시간충전권(200 시간)	300,000 원		
사물함 운영(4 주)	10,000 원		

※ 상기 내용은 영업정책에 따라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으며,지점마다 판매서비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fc.eduplex.net>)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확인서 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_____에서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	---	---	---	---------	--	---

확인서 2 :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 항 규정에 의거, 가맹계약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	---	---	---	---------	--	---

확인서 3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제공확인

본인은 '가맹사업법 제 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가맹점사업자 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	---	---	---	---------	--	---

확인서 4 : 비밀유지확인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 정보를 무단 유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	---	---	---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인)